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71호
 용남로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공고 (민간사업)

1. 7.4.16. 자 용남로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기관지침을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본지구획정리사업
 법 제33조항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여
 사업시행상이 유익한 의견 있으면 **반론을 제시하라**

2. 관급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환경과 및 용남로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위
 임원이 비치 하고 있습니다.
 이 공람공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송부 하였으나 미수
 명자가 대해서는 이 공고로 **처리** 합니다.

3. 사업 개요

- 가. 사업명 : 용남로지구획정리사업
- 나. 시행지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용은동 일부
- 다. 시행면적 : 155,000 평
- 라. 시행기간 : 1071. 안가임부별
 1971년 12월 31일 까지



서울특별시청

공인

소장 토지소유자 (별첨공고 및 대상에 의함)
 지구동장

용남로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공고문 사본과 같이 공고 하였기 불지 하오니 불
 하시고 사업에 유익한 의견 있으면서기 바랍니다.

토지 목록

동	의	지	번	지	적	지	목	비	고
.

제4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각장
제목 신문공고의뢰	
<p>홍남토지구획경리사업은 토지소유자 조합에서 사업을 실시코자 사업별 제1차로 공 고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람공고 토지 하오니 일간지 및 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p>	
가. 예산금액	(2단 × 30행 × 300 × 2개사)
나. 예산항목	홍남토지구획경리사업 추진위원회회 자금으로 지불함.
첨부 공고문 사본 3부.	
제5안	
수신 홍남토지구획경리사업 추진위원회	발신 시장
대표 이상지 (남가작동 32번지)	
제목 홍남토지구획공고에 대한업무지시	
<p>1. 국하판서 제 45, 22차 서울특별시 홍남토지구획경리조합 설립된 인가신청 서류 건설후 장기간에 걸렸던바 건설부로부터 토지구획경리사업법 제12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이 의거 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후 제 2단하라는 지시에 의거 박음과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공고르적용 (직접지불하시고) 과 공람공고에 필요한 보수를 귀 추진위원회에 각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기 공람이 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p>	
가. 예산액	(2단 × 30행 × 300 × 2개사)
나. 공고료	홍남추진위원회회부담 (적정신문사에 지불함전)
첨부 공고문 사본 3부.	
도 언 1부 끝.	

定 款

서울特別市
弘南 土地區劃整理組合

서울特別市 土地調整組合法

第一章 總 則

第1條 本組合法는 土地調整組合法라 稱한다.

第2條 本組合法는 區域內의 土地所有者로서 構成하여 組合員의 福利增進과 地域開發促進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但, 土地公債上 所有者가 意思能力이 없을 境遇에는 그 直系尊屬或 또는 配偶者中에서 代理人 1人을 選定하여 編出한 사람, 所有者가 故人인 境遇 其中 1人을 設定(編出共同者名)하여 編出한 사람을 組合員으로 한다.

第3條 本組合法는 土地調整組合法 第1條 第2條 및 本定款의 定하는 各條마다 下列의 事項을 한다.

1. 土地의 交換, 分台, 閉區, 地目變更, 其他區形變의 變更 또는 公共施設(道路, 橋梁, 堤防, 溝渠, 遊水池, 公園, 市場, 學校等)의 設置又は 變更停止

2. 道路 및 排水에 對한 設備 및 工宅地墾地工等 其他 工作物의 設置 및 이에 附屬되는 施設物設置

第4條 本組合法의 都廳施行區域은

各 一部로서 建設部長官의 認可한 地域으로 한다.

第5條 本組合法의 事務所는 市廳 特別部 內에 設치한다.

第6條 本組合法의 公告는 本組合法의 告示板에 하여, 公告의 內容에

있어 必設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當然으로 組合員에게 通知
또는 日新新聞의 揭提新이다

第7條 本組合의 組合員에 對한 通知 또는 報告는 法律上의 權利
義務에 關係된 住所 또는 居所로 한다.

但, 組合員이 다른 通知를 受知하였을 때는 이를 除外
한다.

第二章 組 合 員

第8條 組合員의 資格 및 權利義務은 다음과 같다.

1. 組合員은 本定款 第2條의 資格을 具備할 要하다.
2. 組合員은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지며 組合에 있어서
表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3. 組合員은 本組合의 業務 및 財力狀況 調査에 對하여
隨時에 權利와 組合員은 이를 說明할 義務을 지어
查察 및 照會等의 請求를 請求할 수 있다.
4. 組合員은 区域内에 所在한 自己所有土地를 喪失하였거
나 그 土地에 對한 所有權을 잃었을 때는 組合員의
資格을 喪失하며 權利義務者는 取得日로 부터 自動的
으로 組合員資格을 喪失한다.

第六條

6. 이때 새로히 權利를 取得한 土地所有者는 領의 변경신 고서를 組合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九條 組合員은 本組合에 對하여 다음과 같은 義務를 負는다.

1. 本定款 및 本事業施行에 適用되는 諸法令 및 諸規定 規約等
2. 本組合에서 報告된 事項에 對한 諸法

第三章 會議

第十條 本組合의 會議은 定期總會, 臨時總會, 理事會로 하고 組合 員이 이를 召集한다.

但, 組合長은 組合召集을 忌避하거나 延宕시킬 때에는 代表者 2分之1 以上の 請求가 있을 時 7日以内 組合員 이 召集하여야 한다.

但, 고문, 감사, 상부, 기술이사는 사분계 의하여 이사회 에 의견할 申할 수 있다.

第十一條 定期總會는 每年 2月中에 開會한다.

但, 創立年度는 此限에 不在한다.

第十二條 各總會議는 在普通半數以上으로 成立하고 議決은 出席人員 過半數以上の 同意로서 此를 決定한다.

但, 總會에 있어서 權利行使을 委任코자 할 때는 本組

合式으로서 1인 1표에 의하여 一時代理權을 行使할 수 있으며 委任狀을 委任狀書 提出하여야 한다.

第 16 條 總會決議를 決議로자한 때에는 出席으로 부의 5분의 1이 出席하면 決議 事項決議를 議決하여 總會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 17 條 本會의 決議는 總會에서 決議한 事項 總會에서 決議하는 事項에 限하여 有效하다.

第 18 條 本會에서 決議한 事項은 總會에게서 決議한 事項과 같다.

第 19 條 本會는 總會決議로 第 27 條에 規定하여 代理員을 選出할 權限은 15 條으로 하여 本會는 總會決議로 第 13 條에 規定한 事項을 執行하 모든 事務의 權限을 執行하며

一. 總 會

1. 收買計算案作成 및 執行에 關한
2. 總會外 提議한 本會의 會議 및 召集方法
3. 借入會의 借入方法利率 및 償還方法
4. 本會의 財
5. 本會의 總會의 權限
6. 本會의 總會의 權限 事務의 執行 및 召集方法

三. 理事会

1. 收支算算의 作成
2. 工作物 및 雜用 物의 管理
3. 土地管理의 決定
4. 組合의 管理 雜用 事項
5. 二重 代表 權의 行使 物의 管理
6. 長官의 代理 權의 行使
7. 組合의 其他 事項 17條
8. 其他 組合의 事務 雜用 事項

第 17 條 理事은 會議을 作成하여 會議에 出席한 3人以上의 組合員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第 18 條 土地의 管理 雜用 權의 行使 또는 土地의 管理 雜用 權의 停止는 土地의 管理 雜用 權의 行使 權의 2分之2以上의 組合員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第 四 章 任 員

第 19 條 本 組合의 下記 任職 員 數는 같다.

理 事 長 1人

理 事 2人

監 事	3 人
顧 問	2 人
常務理事	1 人
技術理事	1 人

- 第 20 條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하며 首席理事는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 第 21 條 顧問은 組合長이 推選하고 理事會의 承認을 얻는다.
- 第 22 條 常務理事, 技術理事 및 事務職員은 理事會의 議決을 얻어 組合長이 任免한다.
- 第 23 條 任員으로서 職務에 怠慢하거나 會議에 5 회以上 不參席하거나 不正行爲가 있는 때에는 任期中이나도 總會 任滿過半 數以上の 議決 依하여 總會決去로서 解任시킨다.
- 第 24 條 組合長, 理事, 監事의 任期는 2 年으로 한다.
- 第 25 條 組合長은 本組合을 代表하고 組合事務를 統理하며 自動的으로 理事가 된다.
- 第 26 條 監事는 定期監査, 臨時監査로 나뉘서 實施하며 年 前後半期로 나누어 組合業務執行狀況 및 財産을 監査하여 그結果를 理事會에 報告하고 意見을 陳述하여야 한다.
- 第 27 條 顧問은 組合長의 顧問에 應하여 事業目的에 協助한다.
- 第 28 條 事務職員은 組合長의 命을 받아 事務에 從事한다.
- 第 29 條 常務理事는 組合의 諸般事務를 進行하며 반드시 組合事務所에 出勤하여야 한다.
技術理事는 組合의 모든 技術的인 部分을 統括한다.

才五章 通分 및 給与

- 才 30 条 組合長은 豫算範圍內에서 職員을 채용할 수 있다.
- 才 31 条 常務理事와 技術理事의 給与金은 理事會의 議決에 依하여 組合長이 이를 決定한다.
- 才 32 条 顧問은 原則的으로 無報酬이나 그 性質에 따라서 一定한 謝禮를 할 수 있다.
- 才 33 条 前 31. 32 条에 所費되는 給与 및 旅費支給方法은 理事會의 決議를 經어 組合長이 이를 定한다.
- 才 34 条 費用 및 組合에 속하는 徵收金을 徵收하러 갈때 組合長은 納入額 納付期日 및 納付場所를 指定하고 10日以前에 通知하여야 한다.
- 才 35 条 費用負擔의 徵收金의 納付를 滯納하였을 時 是金의 徵收會社를 徵收하러 소제에 依하여 理事會法 第 29 條에 依하여 地方稅 徵收會社의 伊에 依하여 徵收한다.

才六章 事業年度

- 才 36 条 本組合의 事業年度는 認可日로 부터 滿 3 年으로 한다.
- 才 37 条 本組合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才七章 費用負擔

才 38 條 土地區劃整理事業法 才 28 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該當地區內的 土地所有者 및 關係人으로부터 分擔金을 徵收한다.

才 39 條 分擔金の 賦課總額은 替賣地 売却 收入金은 除外 次 已劃整理 費計, 公共用 地 工事費 補償金 起債 利息 事務費 其他 經費 等 計

才 40 條 分擔金은 土地區劃整理事業法 才 28 條 2 項을 準用하여 該當地區內에 있는 土地區域에 賦課하고 賦課額에 相當한 土地로서 負擔한다.

才 41 條 事業費 収支 清算額에 比하여 不足이 發生 境遇에는 分擔金을 更正하여 追徴 또는 還付할 事 있다.

才八章 換地交付

才 42 條 組合長은 總會의 議決과 市令 特別市長의 認可를 받아 換地 確定地를 指定할 事 있다. 換地 確定地를 變更 指定코자 할 時도 또한 같다. 換地 確定地를 指定하였을 時 이불 告示하고 土地所有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才 43 條 換地交付의 標準으로 되는 從前土地 各畝의 面積은 土地區劃整理事業法 才 4 2 條 및 市施行令 才 11 條에 依하여 告示한 當日 現在의 土地台帳 및 林野台帳에 依한다. 但 組合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爽測 其他에 依하여

따로 面積을 定하였을 때는 그 面積에 依한다.

才 44 條 換地設計는 加算面積式에 依한다. 從前 土地附近에 換地交付가 不得已한 境遇 飛換地指定을 받 때에는 本定款 47 條에 따른다.

才 45 條 本定款 才 42 條의 通知를 받은 土地所有者는 組合長의 承認을 얻어 換地指定地를 使用할 수 있다. 이때 從前 土地는 使用할 수 없다.

但 特別한 事情에 依하여 換地指定地를 使用할 수 없거나 또는 從前 土地使用을 禁止할 수 없을 때는 組合長이 使用開始 또는 禁止期日 및 範圍를 指定할 수 있다.

才 46 條 組合長이 土地區劃整理事業을 施行하기 爲하여 必要할 때에는 施行地區內의 土地를 使用할 수 있으며 雜草雜物을 使用 또는 除去할 수 있다.

但 이로 因하여 損害를 當한者가 있을 때는 通常生하는 直接的인 損害에 對하여 이를 補償한다.

才 47 條 換地는 從前土地의 位置, 地目, 地積, 土質, 水利利用狀況 地形等を 考慮한 評定價格을 標準으로 하여 從前土地 位置의 附近에 交付함을 原則으로 한다. 評定價格 換은 整理前 各筆의 位置 形狀 收益 買賃價格 交通便否 等으로 斟酌을 말한다.

才 48 條 從前土地位置의 附近에 交付하기 困難한 境遇는 理事會

의 議決에 依하여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位置에 이를 交付할 수 있다.

但 理事會에서 議決이 困難한 本지가 發生時는 議會의 議決에 따른다.

才 49 條 土地區劃整理事業 實施計劃 認可日에 現存하는 建築物並 其他에 대한 換地面積은 前條의 標準에 依하지 아니할 수 있다.

才 50 條 從前의 土地가 減少하여 換地가 一宅地에 未達하거나 土地所有者가 換地交付를 願치 않을 때에는 換地를 交付치 않고 金錢으로서 清算한다.

土地所有者의 申請에 의하여 一宅地面積은 30 坪 以上으로 한다.

但 組合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增換地 및 合算換地를 할 수 있다.

才 51 條 換地決定地를 指定하였을 때는 才 52 條의 規定에 依하여 假清算을 할 수 있다.

이때는 相當한 担保를 提供시킬 수 있다.

才 52 條 ①換地處分에 依하여 徵收 또는 交付하는 清算金額은 權利面積과 換地의 評定價格과의 差額으로 하며 各工區別로 清算한다.

②前項의 權利金額이라 함은 權利面積에 從前位置에서 整理後 評定の 單價를 乘한 것으로 한다. 前項의 權利面積이라 함은 定款才 43 條의 規定에 依하여 決定한 標準面積

에서 公共用地로서의 負擔面積을 控除한 面積을 말한다.

才 53 條 公共用地로서 負擔面積才 質費地 負擔面積을 控除한 面積을 말한다

才 54 條 定款 才 51 條의 規定에 依한 假清算金과 同 52 條 ①項의 規定에 依한 清算金과의 差額은 換地処分認可後 即時 追徵 또는 遺付한다.

才 55 條 組合長은 土地區劃整理 登記終了時는 換地說明書의 抄本을 地籍配賦終了時는 地籍配賦의 抄本을 送부하여 土地所有者 및 關係人에게 通知한다.

才 56 條 土地所有者 및 關係人이 서울特別市內에 居住하지 않을 時는 市內에 居住하는 代理人을 定하여 組合長에게 申告해야 한다.

代理人을 變更코자 할 時도 또한 같다.

才 57 條 本定款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細則은 總 會議이 定한다.

才九章 雜 則

才 58 條 定款 才 2 條 同才 56 條의 規定에 依한 代理人設定의 届出은 別紙 才一號 樣式에 依한다.

才 59 條 定款 才 45 條의 規定에 依하여 換地決定地 使用承認 申

請은 別紙 才 2 号의 樣式에 따른다.

才 60 條 才 8 條 6 項의 届出은 別紙 3 号의 樣式에 따른다.

才 61 條 本定款에 依拠하기 困難한 境遇는 總務의 審決에 따라
處理한다.

本 定款은 本事業實施計劃認可日로 부터 施行한다.

本 定款變更은 變更認可日로 부터 施行한다.

第一号 様式

代 理 人 設 定 届

서울특별시 土地区劃整理組合 定款 第2条, 第58条의 規

定에 依한 代理人을 로 定하여 連署로서 届出 합니

다.

197 年 月 日

住 所

土地所有者 姓名

住 所

代理人 姓名

土地区劃整理組合長 責下

換地豫定地使用願

貴 組合에서 施行하고 있는 土地區劃整理地區內에 下記 土地를 使用하고자 아래와 같이 申請하오니 承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北

從前土地		換地豫地		使用所		所有者	
地目	地面積	부락번호	符號	使用目的	住所	姓	名

上記와 같은 第 〇 부락 第 〇 號 本人 所有地에 對한 換地豫定地 使用을 承認해 주시면 工事 其他 事業施行에 支障이 있을 時 농작물 및 其他工作物을 指示에 따라 何時라도 直刻 撤去하 옴기에 이에 따르는 補償要求 또는 異議等을 申立치 않겠음.

但 豫定地 使用時 境界統은 貴組合에 手數料를 納付하여 境界를 指定받을 것임.

西紀 197 年 月 日

住 所

姓 名

土地地区、整理組合長 数下

上記 申請의 件 下記 條件을 附하여 承認함.

197 年 月 日

記

- 一. 換地指定地를 使用할 時은 換地指定地 指定表示規에 依拠치 않으면 使用할 수 없다.
- 二. 前記 表示規은 잘 保管할 것이며 缺失時는 再表示規 對한 手 續料을 徵收함.
- 三. 工作物 또는 建築은 着工 及 竣工의 輸出을 直時까지야 한다.
- 四. 申請한 面積以上의 使用 또는 目的以外의 使用을 하였을 때는 承認을 取消하고 原狀復舊을 命할 수 있다.

土地區務管理組合長 費下

第3号 様式

土地所有權移転届

洞名	地番	地目	地種	売買面積	換地豫定地			備考
					구역	符号	坪數	

197 年 月 日 売買하였으므로 連署로

서 茲히 提出합니다.

197 年 月 日

住 所

所有權取得者 姓名

住 所

旧所有者 姓名

土地区調整組合長 貸下

實 施 計 劃 認 可
申 請 書

第1號表

實施計劃

認可申請事項

實施計劃認可申請事項

1. 事業執行地

外宅特別市 西大門區 弘恩洞 南加佐洞 北加佐洞 斗各一郵

2. 事業種類

土地區別整理事業

3. 年度別 事業執行

別作, 第1号表外 答旨

4. 事業着手 日 及工務定年月日

西紀 1977 年 月 日 認可日 早計

西紀 1977 年 12 月 31 日 完工

添付書類

1. 事業計劃書

別作, 第2号表外 答旨

2. 事業決算書

別作, 第3号表外 答旨

3 財源調書

別紙 第4号表斗 該当

4. 一般圖面 及 計劃平面圖

別添 圖面斗 該当

5 費用負担方法

第4号表 財源調書 及 第1号添 區劃整理事業

負担金 徵收條例 参照

6 土地處分方法

接地方付 (第5号表 施行規則 参照)

7 土地區劃整理施行三 必要並 事項言 定計 規則

1) 土地區劃整理施行規則 : 別紙 第5号表斗 該当

2) 土地區劃整理負担金 徵收條例 : 別紙 第6号表斗

該当

8 地區 及 隣接地斗 現況圖

別添 圖面

- 9 工事施行前後の 土地地目別 面積合計豫定表
別紙 第2号表 事業計劃書 第5章記載事項并 別紙
- 10 工事臨接地에 미치는 影響
別紙 第2号表 計劃書 第6章第3節記載并 別紙
- 11 異議申告에 依하다 変更한 部分에 關한 事項
(別紙) (別紙)
- 12 事業費概算書
別紙 第7号表并 別紙
- 13 路原請書 并 公共用地調查 第10号表)
- 14 國有地編入調查
別紙 第11号表并 別紙
- 15 事業地至面積에 對한 公共用地面積對比表
別紙 第12号表并 別紙
- 16 土地原簿
別紙一 別紙

第1號表

年度別事業執行一覽表

事業別	年度別	總預算額	年 度 別		
			71	72	73
道路工事費		162,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下水道工事費		31,000,000	10,400,000	10,300,000	10,300,000
排水工事費		28,000,000	43,500,000	34,500,000	20,000,000
尾端造設工事費		42,800,000	14,400,000	14,200,000	14,200,000
補償費		30,000,000	24,000,000	11,000,000	
事務費		30,765,000	10,015,000	16,245,000	4,505,000
交付費		435,000	235,000	200,000	
豫備費		3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合 計		425,000,000	163,550,000	147,400,000	113,045,000

第2號表

事業計劃書

16

目次

1.0	緒 論	9
1.1	事業之 必要性	9
1.2	事業之 目的	10
2.0	工事施設	12
2.1	街 廊	12
2.2	街 路	12
2.3	宅地敷設計劃	15
2.4	排水施設設計劃	16
3.0	主要之 工事之 示方	17
3.1	施工順序	17
3.2	施工方法	17
4.0	工事施行前係之 地目別 面積合計表	18
4.1	工事施行中 地目別 積算 面積合計表	25

5.1	永久的利益	23
5.2	公共的利益	23
5.3	工事臨時地 地 米利之 影響	24
6.0	事業費 及 事業施行期間	24

1.0 緒論

1.1 事業의 必要性

本事業地區는 旣特別市 西大門區 弘恩洞 南加佐洞 北加佐洞의 各一部에 該當하며 1967年度 旣已 施行한바 있는 驛村遮阻(水色) 土地區劃整理地區의 西半과 南半의 旣存部는 溢出을 豫見하여 山발쪽으로 無理하게 건축되어 甚不良地區化 되기 쉬운 地域으로 조속한 時期內에 旣已 도시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區劃整理事業을 施行하여 健全한 住宅地域을 造成하여 土地利用度를 높이며 交通 保健 保安等 經濟的으로 市民生活의 向上을 도모코자 함

2.0 工事施設

2.1 街 廓

街廓은 大体로 短邊 50 ~ 70 M 內外 長邊

120 ~ 150 M 內外로 四方形과 長方形으로

建設에 有利하며 考慮計外이며 主로 長邊의 幹線

街路에 合致하며 且 交通保安上 考慮計外 長邊의

計 平行에 하며 道路交會를 防止 計外이며 現存

建物 多 移築에 計外이며 그 位置를 最大限으로

合致計外함

2.2 街 路

1) 道路의 配置

都市基本計劃에 依한 幹線道路를 根幹으로 計外

細部街路를 配置計外이며 幅은 25.0M 15.0M, 6M

4 M 3 計算함

2) 道路交叉의 街角剪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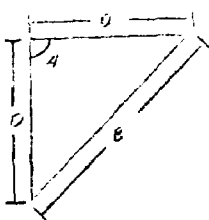
街路交叉의 街角 도 자르기는 다음 基準에

依한다

街角剪除表

(單位：M)

	街道幅	40M	30	20	15	12	10	8	6	4
		12M	10M	11M	8M	M	M	M	M	M
交叉角 70° 前後	40									
	30									
	20									
	15									
	12					4	5	5	5	3
	10					5	5	5	5	3
	8					5	5	5	5	3
	4					3	3	3	3	2
交叉角 60° 前後	40	15	12	12	10	8				
	30	12	12	12	10	8	6			
	20	12	12	12	10	8	6	6		
	15	10	10	10	10	6	6	6	6	
	12	8	8	8	6	6	6	6	6	
	10		6	6	6	6	6	6	6	4
	8			6	6	6	6	6	6	4
	4				6	6	6	6	6	4
交叉角 120° 前後	40				6	5				
	30				6	5				
	20				6	5				
	15				6	5				
	12				5	5	4	4	4	2
	10					4	4	4	4	2
	8					4	4	4	4	2
	4					2	2	2	2	2



$$O = \frac{B}{2} \cos \frac{A}{2}$$

B = 街道之 兩路長

O = 街角邊以外 路邊之 導引之 剪除計之 長

A = 街角之 角度

3) 横断勾配

3) 幅員 15M 以上の道路に歩車道の区別を 하여

横断勾配之 車道 4% 歩道 2% 是함.

4) 幅員 12M 以下の道路に歩車道の区別을 두지

아나 하면 横断勾配之 4% 是함.

4) 縦断勾配

現在의 地形에 따라 勾配를 考慮하여 3% 以上の

勾配는 可及的 避하여 下水道 排水의 安全勾配를

勸業함

5) 例 溝

道路側溝는 素地側溝를 掩蔽하도록 하여 幹線街路

(幅 15M 以上)는 歩車道 界에 幅員 12M 以下の

道路에는 道路境界에 側溝를 設置함

2.3 宅 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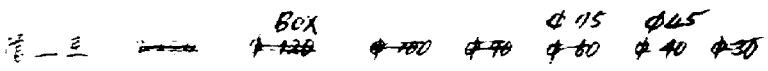
1) 宅 地 區

用途地域別に 依據して 地勢を 考慮して 背割線 其他に 規程に 依りて 換地等

23 空地造成

空地に 接面道路を 並べると 約15% 空地にして
坪数を 片滑る 期して 快適な 生活を 營むに して
能率的に 活動を 可能にする

24 排水

各道路に 路面排水の 側溝として 利用を して 이를
主要地に 計劃した 幹線排水路に 連絡するに 道路横
断の 境邊に 横断下水渠を 敷設して 細部は 下水
管として 
の 形式を 管として 幹線下水路外に 誘導する 計画を

2.5 제방도로 신설

본지구의 동남부를 흘러 한강에 유입되는
홍제천 서측 제방도로 (연장 800m 폭 10m)는
현재 응축 제방보다 2.0m나 높아 본지구내의
진입도로 개설은 물론 지구내의 선도량나 제방도로
폭 20m 폭로에도 약대한 공사비가 소요됨으로
본하천의 화해 홍수위를 산출하여 적절한 제방고를
책정하고 제방도로의 고저차에서 오는 여탈면적을
결감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코자함.

3.0 主要한 工事의 示方

3.1 起工順序

- 1) 道路 및 宅地의 穴模斷 測量을 施行하여 設計圖面을 作成함
- 2) 工事予定 工程表를 作成하여 作業計劃을 樹立함
- 3) 工事施行方法을 決定하여 起工함

3.2 起工方法

- 1) 上工之 測量杭을 基準으로 하여 所定의 規定을 遵守하여 切土 및 盛土를 할 것이며 盛土에는 規定의 余盛土를 하여야 함
- 2) 各構造物에 使用計之 資料之 所定의 要件을 具備하여야 함
- 3) 排水 工事를 先行하여 洪水被害을 未然에 防止함
- 4) 現在 使用中의 道路의 範圍之 外에 位置한 仮道를 設置하여야 함
- 5) 道路築造時 居住者의 出入에 支障이 生도록 適當한 施設을 設치 通行에 支障이 生도록 하여야 함

整理前後地目別面積合計表

整理別	所屬	整理前			整理後		備要
		現在用途	地目	面積	筆數	面積	
一般用地	民有地		田	35,143	147	89,070	
			畑	33,619	68		
			庭園	23,413	191		
			雜木林	9,073	14		
			山林	33,163	18		
			野	134,011	438		
			池	810	3		
			道	275	1		
			庭園	6,114	20		
			山林	102	1		
公共用地	公園 市場 營業地				1,600		
					850		
					28,334		
			計	7,321	27	30,784	
已剝整理地	民有地		田	5	1	35,146	
			畑	146	5		
			庭園	151	6		
			野	2,177	8		
			池	5,342	3		
	11	1					

桂州	所有	整理前			整理後		摘要	
		現在用途	地目	面積	筆數	面積		筆數
第五十三條 鼓當地	有地		水田	1.300	2			
			田	1.199	1			
			干川	3.361	1			
			計	13.517	16			
			合計	13.669	22	35.126		
			總計	45.000	450	155.022		34.5%

감보총 계 산서

현재 용도	정리 전	정리 후	비고
지주내 총면적 일반적 가산 면적 가산잔 면적 53조 해당지 합계 면적	155,000 평 141,332 .. 3,500 .. 10,168. 13,668. 144,832.-		
대궐 도로 공 원 시 장 체 비 지 계		차. 146.- 1,600 850 28,334.- 65,830.-	
평균감보율	$\frac{55.762}{144.832}$	$= 0.385 \rightarrow 38.5\%$	$38.5\% \checkmark$

5.0 工事施設에 의한 利益

5.1 永久的利益

順序計劃은 既存道路를 整理함과 同時에 新
道路를 築造하여 都市宅地로서 此事不可缺少 架空
地 施設(電柱, 電信柱, 上下水道管)의 設置를 容易
케 하여 不定形計劃은 土地各筆을 正形으로 宅地劃計
到을 實施 商街 및 住宅地로서는 利用價
值를 增進할 것으로서 土地自体가 지닌 價値가 越等的
上昇케 된다

5.2 公共的利益

- 1) 順序整然한 街路가 新設되므로써 交通의 円滑을
期함과 아울러 一朝有事時에 避難 및 防火活動에
迅速을 期하는 積荷를 最少케 할 수 있게 함
- 2) 上下水道 電氣 其他의 諸般 公共施設物을 理想的
으로 配置할 수 있어 經濟적으로 市民生活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3) 排水施設을 合理的으로 事前施設할 수 있어 衛生
保安上 良好한 市街地를 만들 수 있다

3. 一时的利益

정리 전후 地価 (坪當) 比

	㉠	㉡	㉢
정리 전	10,000	7,000	4,000
정리 후	20,000	15,000	10,000

5.3 工事隣接地에 미치는 影響

既計 施行한 바 있는 駁村地區追加(水色)土地已割
整理事業과의 關係性은 弘南土地已割整理事業의
旅行으로 未開發 상태 속에서 健全한 住宅地로서
改良茶屋 등으로 駁村追加(水色)地區一帶都市로서의
面貌를 一新케 함으로 隣接地에 미치는 影響은 큰 것 같

6.0 事業費 및 事業施行期間

事業費 全 回億貳千三百萬 원 利率 17.425.000.000 원

着工年月日 西曆 1971 年 月 日 專使計劃認可

竣工年月日 西曆 1973 年 月 日

第3號表

收入支出豫算書

~

豫 算 書

收入

一金四億貳千五百萬 調整 # 425,000,000

支出

一金四億貳千五百萬 調整 # 425,000,000

收 入 內 詳			
科 目	金 額	附 記	
款 項 目			
土地區劃 整理事業費	425,000,000		
1 負擔金	424,000,000		
負擔金	424,000,000		
2 補助金			
國庫補助金		費率 28334 坪	
3 寄附金	700,000	市場 850 坪	
1 既得寄附金	300,000	計 2114 坪	
2 清算寄附金	400,000	坪當 14,563 坪	
4 雜收入	300,000		
雜收入	300,000		

16.

支 出 内 译

科 目	项 目	日 期	金 额	附 记	
土地区划 整理事业			425,000.000		
	1	工事费	262,800.000		
		1	道路工事费	162,000.000	(野)
			少年工务所	31,000.000	
		2	排水工事费	18,000.000	(73号9注)
		3	宅地工事费	42,800.000	
		4	植 植 费	30,000.000	
	2	事务费	30,765.000		
		1	俸 给	18,300.000	
		2	雜 费		
		3	需 用 费	1,850.000	
		4	用 役 费	5,115.000	
		5	雜 费	5,400.000	
	3	交付金	3,000.000		
			435.000		
		1	町界交付金	200.000	
		2	町界交付金	235.000	
	4	予備费	30,000.000		
			予 備 费	30,000.000	

第4號表

事 業 費
財 源 調 書

事業費財源調書

工事費

— 金四億貳仟五百萬 — 月整 425,000,000

円 譯

種 類	金 額	附 記
國庫補助		
地方補助		
負担金	424,000,000	
徴収金	700,000	
雑収入	300,000	
合 計	425,000,000	

第5號表

施行規則

施行規則

第1條(目的) 土地區劃整理事業法(以下 法_レト稱_ス中)

第7條_ノ規定_ニ 依_テ 弘南土地^{弘南土地}區劃整理組合_ヲ 施行_ス 命_ジ

惟特別市 都市計劃弘南土地區劃整理 事業_ニ

此等_ノ 事項_ハ 実務_ニ 依_テ 事業執行_ス 月令_ニ 期_ス

旨_ニ 行_フ

第2條(名稱) 本 土地區劃整理事業(以下 本事業_ト稱_ス中)

稱_ス 弘南土地 區劃整理事業_ト 稱_ス

ト

第3條(地區) 本 事業地_ハ 西_レ 19 年 月 日

建設部 告示第 号_ニ 依_テ 惟特別市 都市計劃弘南

土地區劃整理事業^業地區_ト 定_ム

第4條(事業_ノ 範圍) 他_レ 法_ニ 功_レ 用_ニ 增_ス 進_ス 爲_ス 計_ス

土地_ノ 方_レ 格_ニ 依_テ 區劃 地目_ノ 方_レ 格_ニ 依_テ 形_ノ 質_ニ

方_レ 格_ニ 依_テ 施_ス 行_フ 爲_ス 計_ス 此_レ 地_ニ 施_ス 行_フ 爲_ス 計_ス

行_フ 爲_ス 計_ス

第5條(基本面積) 按地交付의 基準이 될 從前土地의 面積은 西紀 1971年 4月 8日 現在의 土地台帳 및 林野台帳에 依한다 但 下記 各條에 依하여 다른 面積을 定計하였을 때는 그 面積에 依한다

1) 1971年 4月 8日 以後에 있어서 新規登錄 또는 그 舍合을 날의 土地台帳 또는 林野台帳의 面積

2) 照合台帳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實測 其他方法 有 依하여 面積을 定計하였을 때는 그 面積

第6條(土地價格評定) 整理前 및 整理後의 土地價格 評定은 位置, 形狀, 高低, 乾溼, 地價, 交通, 便否, 收益, 及 環境 等을 參酌하여 小冊 決定한다

第7條(按地予定地指定) 整理施行者가 必要하다고 認定 할 對에는 第10條 規定에 準하여 從前土地가 對應 按地予定地를 指定할 可 하다

前項의 規定에 依한 換地予定地를 指定하였을 때에
는 이를 公告함과 同時에 關係 土地所有權者에게 通
知하고 그 指定을 變更 또는 更正하였을 때도 도
한 같다

第 2 條 (換地予定地의 使用) 前條의 通知를 받은
關係 土地所有權者는 그 換地予定地를 使用할 수 있다
이 때에는 從前의 土地의 使用할 수 있다
但 特別한 事由로 因하여 換地予定地의 使用 또는
從前의 土地使用을 禁止할 수 있을 때에는
다음 使用開始 또는 使用禁止의 期日 및 그 範圍
를 指定한다

第 9 條 (土地使用의 制限) 整理施行者는 整理區域施行
上 必要할 때에는 整理施行地區內의 土地를 使用할
수 있다

前項의 規定에 依한 補償金額은 協定에 依하여 定
하며 協定이 成되지 아니할 때에는 管轄土地收用
委員會의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第10條 (換地交付) 換地는 權利面積을 標準으로 하여
從前의 位置 또는 이에 外다른 位置에서 交付하는
原則으로 한다

本 事業實施計劃認可公告日에 現存하는 有許可建物敷
地 또는 通償하다고 認定하는 建物敷地에 對한 換
地面積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할 수 있다
整理後 公用 또는 公共의 用に 供하는 土地의 費
費地에 있어서 第1項의 規定에 不符하고 通償하
다고 認定하는 位置에서 交付할 수 있다

整理後 公用 또는 公共의 用に 供하는 土地에 對
한 換地는 減量하지 아니한다

第11條 (金額清算) 整理前의 土地面積 또는 評定價格
이 尠少하여 一宅地로는 不足하고 認定하는 土地

에 처하여는 換地를 交付 せず 金銭으로 清算할 수 있다.

第12條(假清算) 換地于 換地를 指定하였을 때에는 第15條規定에 準하여 假清算을 할 수 있다.

第13條(清算金) 換地處分에 依하여 徵收 또는 交付할 清算金額은 權利金額과 換地の 評定價格과의 差額으로 한다.

前項의 權利金額이라 함은 權利面積에 從前位置에서 의 整理後 土地評定價格의 單價를 乘한 額으로 한다.

前項의 權利金額이라 함은 標準面積에서 負擔面積을 扣除한 面積을 말한다.

第14條(負擔面積) 公共用地上 於한 土地召集의 負擔面積은 從前의 位置에서 當該 土地의 整理前 및 整理後의 評定價格의 差額에 對한 幅員을 基準으로 하여 一定의 負擔率에 依하여 算定한다.

第15條(清算) 第12條의 規定에 依한 假清算金斗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清算金斗의 差額은 換
地賣介後 直時 追徵 すべき 交付금이다

第16條(分期延納) 第12條의 規定에 依한 假清算
金斗 第13條第1項 規定에 依한 徵收 すべき 交付金額
은 一時에 徵收 すべき 交付금이다

但 此事가 되고 規定할 때에 2個年以內에서 分
期徵收 할 交付할 수 있다 이 境遇 延滞額에
對하여 年 分斗 利息을 附加한다

第17條(價費地賣却) 價費地賣却에 關하여는 그 土地
의 位置 面積 環境價格, 賣介方法, 其他 一切事項은
이를 公證한다

第18條(會計年度) 本 事業의 會計年度는
將例에 依한다

第19條(通知) 土地區劃整理를 畢하였을 때에 換地
說明書의 抄本을 添附하여 關係 土地所有者에게 通

知한다

第 20 條 (代理人申告) 本 事業地區의 土地所有者로서
사업지구내에 現住하지 아니하는 者는 清算金의 納付
手續 또는 書類의 送達 其他 本事業에 關한 一切
事項을 處理하기 爲하여 사업지구 內 現住者로서
代理人를 定하여야 한다

土地所有者는 前項의 代理人를 定하였을 때 또는
이를 変更하였을 때에 是時 그 姓名 住所 또는
居所를 組合長 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代理人의
住所 또는 居所를 変更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
다

第 21 條 (異動申告) 換地處分前의 土地稅法 地籍法
또는 不動産登記法에 關한 手續을 하교가 할 때에
는 그 事項을 組合長 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前條
또는 前項의 申告를 하기 아니함으로써 소하는 換
地의 登記에 是 異動을 發할 수 없다

第22條 本規則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如
하에 定한다.

附 則

本規則은 公布한 日로부터 施行한다

第6號表

分担金賦課徵收條項

分擔金賦課徵收條例

第1條 地方自治法 第27條及 土地區劃整理事務法 第12

條에 依하여 當該地區內의 土地所有者 또는 關係人
으로 부터 分擔金을 徵收한다. 但 分擔金이
相當한 金額을 當該地區內의 土地로서 徵收할 수
있다.

前項 但書의 土地는 權地權者 이를 区分하여 當
該區劃整理事務費에 充當한다.

第2條 分擔金의 賦課總額은 區劃整理를 爲한 二事費

補償費, 起費刑子 事務費外 其他 必要한 經費의 總
額에서 下列의 金額을 扣除한 金額으로 한다.

1. 補助金
2. 雜收入

第3條 前條의 分擔金은 區劃整理地區內에 있는 土地

其他 施設物의 整理前과 整理後의 評定價格을 比較

관 省差額 또는 整理後 面積의 比에 依하여 賦課한다. 但 下列 各号의 1 에 該當할 때에는 이를 減免할 수 있다.

1. 區劃整理를 爲하여 土地나 物件 또는 勞力을 提供할 때

2. 特別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

第 4 條 分担金은 組長이 指定하는 期日과 場所에 納付하여야 한다.

第 5 條 分担金の 徵收에 있어서는 地方稅 徵收의 例에 依한다.

第 6 條 事業費 收支者算이 予想額에 比하여 過不及이 生할 境遇에는 分担金을 更正하여 差額 또는 還付할 수 있다.

附 則

本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7號表

換地與土地價格算出細則

換地 및 土地價格算出細則

第 1 章 總 則

第 1 條 換地交付 및 清算에 關하여서는 施行規則에
대한 外에 本細則에 依한다

第 2 條 換地 1 個의 土地를 1 副地라 하며 이를 아
래의 三種으로 区分한다.

1. 普通地 ; 角地 및 特別地 以外의 土地
2. 角地 ; 前面 및 側面에 道路가 있는 土地
3. 特別地 ; 在來의 建築物이 있는 敷地 (事實上使
用面積 또는 法規上 必要한 面積)

第 3 條 副地의 間口 및 正水 與行은 下列의 標準에
依한다

1. 間 口

가 普通地 ; 最少 2 間 1 分 5 厘 (5 米)

4. 角地 ; 最少 5間 (9091米)

但 側方 道路幅員에 依한 開口은 別添第1号
表의 標準에 依한다.

第 4 條 則地의 標準正味與行은 別添第2号表 標準正味
與行表에 依한다.

第 5 條 則地의 背割線의 位置은 標準正味與行을 標準
으로 하여 地形, 地域, 道路幅員等을 參照하여 區
劃되 處한다.

第 6 條 換地은 換前土地의 原位置에 가까운 處에서 文件
하기 外하여 劃當區域을 處하여 行한다.

劃當區域은 地區界 또는 道路中心線과 圍繞된 區
域으로 한다.

第 7 條 換地位置의 劃當은 施行規則第10 條 第2項及
第3項의 規定을 除外하고는 아래 項位에 依한다

1 普通地

가 計劃道路中心線에 近接한 項位에 依한다.

~44~

나 道路에 接하지 않은 土地는 番号의 次序에
서 交付된다.

㉑ 町界區域界를 거쳐 教團廓에 接하는 土地는
이를 分割하여 交付한다.

㉒ 分割로 因하여 또는 以前各個의 土地로서
그 換地面積이 現狀의 最少開口에 達하지 아
나할 때는 面積이 큰 土地에 合併하여 이를
交付한다.

2 角地

가 道路中心線交角을 包含한 土地를 第一선로
하고 道路中心線 交角으로부터 以前의 土地
境界線까지의 最短距離의 土地를 第二선로 하
여 順次 配當한다. 但 角地에 交付할 土地
로서 現狀開口에 達하지 아니하는 것은 第二
次の 普通地에서 交付한다.

나 道路中心線交角을 包含하여 教團劃當 區域에

결쳐 分割換地面積이 現尺의 最少開口 以上
되는 土地는 數個의 換地를 交付하고 分割面
積이 現尺의 最少開口에 未達되는 土地는 面
積이 큰 土地에 合併 換地를 할수 있다.

3 廣場 公園、河川、溝渠、市場 其他의 公共用
地의 數地로 되는 土地

가. 廣場、公園、河川、溝渠、市場、其他의 公共
數地로 되는 土地의 換地는 順次 1 公共
數地에 並接하여 交付한다.

第 8 條 從前 土地의 1人所有面積에 依하여 現程開口
의 換地를 交付키 不能할 때에는 過渡交付를 하거
나 또는 換地를 交付키 아니하고 全額으로써 交
付할 수 있다

特別한 事情에 依하여 前條各号의 順位에 依하
여 交付키 困難한 土地는 從前土地의 原位置에서
假想換地를 한 權利金額을 移動 換地先의

整理后의 評定價格으로서 除하여 換地面積을 定한다
第 9 條 施行規則 第 13 條에 依한 權利 金額 및 數地
의 評價 算出上의 面積計算은 四捨五入法에 依하여
寸位까지로 한다.

但 換地의 面積은 四捨五入法에 依하여 合位로 定
한다.

第 2 章 土地評價方法

第 1 節 整理前의 土地面積

第 10 條 整理前의 土地의 評價面積은 施行規則 第 5 條
에 依한 面積으로 한다.

第 11 條 換地交付의 時前의 土地 標準面積은 前條의
土地의 面積에 整理前 公道에 接한 土地에 附
하여는 아래 各款에 定한 面積을 加算한다.

1. 公道에 接한 土地에는 道路幅員의 2 分 $\frac{1}{2}$ 을

接面長에 乘한 面積

2. 公道의 終末에 設置한 土地에는 그 公道幅員의 自乘에 相當한 面積

3. 公道에 接한 何地에는 第1號에 依한 加算外에 則方道路로 認定하는 道路幅員의 6分之1 또는 4分之1에 그 面積長을 乘한 面積

4. 公道의 幅員은 路線의 認定 平均 幅員에 依한 矣.

5. 前 各号에 依하여 加算하는 土地의 平均 奥行 5間未滿일 때는 그 土地의 面積을 5間으로 除한 更正接面長에 依하여 算出한다.

但 加算하는 土地의 接續奧地가 同一所有者가 同一 境遇에는 그 奧地를 包含하여 公道에 接한 土地로 看做한다.

第12條 第10條의 土地로서 1個의 土地의 平均幅員

(1) 土地의 面積은 最長徑으로서 除한다) 5間未滿의 帶狀의 土地일 때에는 第3号表에 依한 遞減

率은 工 面積에 依하여 評價面積을 減한다

第2節 整理前의 土地 評定價格

第13條 整理前의 土地의 評定價格은 位置、高低、乾濕 境遇를 參酌하여 이를 定한다.

1. 位置價는 地區, 丁 相圖(3000分之1)에 標準 이 될만한 地矣 數個所를 選定하고 標準地矣의 坪당 評定價格(高低、乾濕、環境 等 考慮치 音)을 定한다.

標準地矣 相互間 評定價格은 數推算尺에 依한 圖上에 等值線을 記入하고 이를 定한다.

但 相圖上에는 地區界、大河川、海岸、鐵道線路等 의 큰 目標가 될만한 것만을 記載하고 細部의 것은 記載치 아니한다.

標準地 價格은 現況 都市地에서 遠近 便利의 程度 및 賣買의 定例 建築敷地로서의 實資料

全取換附의 査定價格 等은 資料로 하여 評定한다.

2. 高低에 依한 評價는 各土地 相互의 價格의 均衡을 認기 爲하여 凹凸 또는 傾斜地는 附近의 適良 地盤을 標準으로 하여 前號의 評定價格에서 減額한다.

3. 乾濕에 依한 評價는 土地調査局 水準高 2米以下의 土地 및 乾濕의 程度에 따라 第一項의 評定價格에서 減額한다.

4. 環境에 依한 評價는 騒音 危險物 非衛生物, 煤煙等의 施設이 있는 附近의 土地 또는 日照不良의 土地에 對하여는 各々 그 程度를 考察하여 位置價로 부터 減額한다.

第14條 整理前의 土地各價의 全評定 價格은 評價面積에 第13條에 依하여 算出된 評價價格(坪當)을 乘한 것으로 한다

第 4 節 整理后의 土地平定價格

第 15 條 整理后의 土地價格은 路線에 依하여 算出한다
路線價라 함은 標準正味 奥行을 가진 土地의 坪당
平均價格을 말한다.

第 16 條 路線價의 評定은 아래 方法에 依한다.

1. 路線價의 評定은 比隣法에 合升數에 路線의
位置價 指數를 乘하고 最高最低 價格을 尺한 價
格高低 指數에 依하여 算出한다(附表 第 1 号表);
2. 路線位置價指數는 地區內 數個所의 標準地를 決
定하고 標準地의 指數에 依한 各 路線에 對하여
狀況이 다른 때마다 区分된 各 區間의 位置價指數
를 比較 考慮하여 定한다.

第 17 條 副地의 形狀이 標準正味 奥行을 갖지 않는
各種의 土地價格의 算出은 아래 方法에 依한다.

1. 標準正味 奥行을 갖지 아니한 土地價格은 工與

行長의 大小에 依하여 第5号表의 率을 乘하여
算出한다

但 奥行이 特別히 少어서 利用冊가 不良하다고
認定한것은 適當히 修正하여 算出할수 있다.

2. 副境界의 奥行長 兩邊이 同一지 不是은 土地價
格은 兩邊長을 平均하여 算出한 額에 第1号表
의 率을 乘하여 算出한다.

3. 副境界가 道路에 對하여 直角이된 土地는 前
表 第5号表에 依하여 算出한 額에 第6号表의
率을 乘한 額으로 한다.

4. 二層 以上の 道路(側方 및 背面 道路에 接
한 土地의 價格은 路線價 率之 便宜 前面 道
路로 算出된 價格에 地를 側方 道路로 看
做하고 商業地域으로는 側方路線價의 4分之1
其他 地域에 있어서는 6分之1에 相當한 額을
加算한 額으로 한다.

5. 前号에 依하여 加算하는 額으로서 標準間口 보다 작은 用地 일때는 第7表의 減率을 乘하여 算出한다.
6. 用地의 標準間口 圍內에서 前号의 此位가 되는 土地일 때는 本條第4号에 依하여 加算하는 側方 路線個額에서 前号에 依하여 算出した 額을 控除한 殘額을 加算한다.
7. 用地로서 道路의 交叉角의 銳角 또는 鈍角이 된 境邊에 評定價格은 本條4号의 加算額에 第8号表의 率을 乘한 額으로 한다.
8. T字 交叉路의 맞닿는 土地는 用地로 看做하고 아래 區間路線個에 맞닿는 道路×線個의 4分之1을 加算하고 그 範圍의 土地價格을 算出한다.
 가 直交T字 交叉의 境邊는 交叉道路中에 街角 算除切線長을 加算 區間
- 나 斜交 T字交叉의 境邊는 道路中心交叉에서 全

面道路에 垂線을 내리고 直交의 範圍에 있어서
範圍長 2分之1式으로 나눈 區間으로 한다.

9. 階級으로된 副地區內에 비탈이 있는 土地는 그
部分의 石築費 및 盛土費를 그 土地의 評定價格
에서 減額한다.

10. 河川 또는 市界에 浮接한 道路에 面한 土地의
評定價格은 아래 区分에 依하여 路線距離를 更正하
여 이를 算出한다.

但 橋梁架設地 및 兩端에 있어서 河川 또는 市界
各邊의 道路를 側方道路로 한 角地에 對하여는
此限에 不在한다.

가 河川 또는 市界가 市界內인 때는
正乘與行長에 河川 또는 市界의 2分之1을
加한 長을 與行長으로 한다.

나. 河川 또는 市界가 市界外인 때는

때는 이든 道路市員과 同一市員의 河川 또는
前乘로 看做 되고 그 二分之二에 工事與行長을
加한 長을 與行長으로 한다

第 4 章 公共用地負擔

第 18 條 施行規則第 14 條의 規定에 依하여 整理前 各
筆의 土地의 負擔하는 公共用地의 負擔은 公共用地
負擔 規程의 規定 外에 做한다

第 5 章 清算

第 19 條 模範交付의 結果 遺殘 또는 不足으로 된 土地
의 收益에 對한 清算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時
에는 施行規則 第 12 條의 反清算에 이르기까지
收益을 見積하여 徵收 또는 交付한다

第 6 章 雜 則

第 20 條 特別한 事情에 依하여 本細則에 依據處理키

困難을 때에는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바에 依

하여 取扱할 수 있다

但 그 境遇에는 町條規程에 그 事由를 附記하여

야 한다.

附 則

本細則은 西紀 1971 年 月 日부터 施行한다

第一号表 角地斗標準間口表

側面道路巾員	40	35	30	25	22	20	15	12	10	8	6	
標準	米	30	28	26	24	23	22	21	20	19	18	16
間口	間	18.5	15.4	14.3	13.2	12.6	12.1	11.55	11.00	10.45	9.9	9.8

第二号表 標準正味與行表

側面道路巾員	40	35	30	25	22	20	15	12	10	8	6	
標準正味	米	30	27	26	24	23	22	21	20	19	18	16
與行	間	18.5	15.4	14.3	13.2	12.65	12.1	11.55	11.00	10.45	9.9	9.8

第三号表 带状地進減率表

平均巾員	5 向 未 測	4.5	4.0	3.5	3.0	2.5	2.0	1.5	1.0
乘率		0.99	0.98	0.97	0.95	0.90	0.85	0.80	0.79

第四号表 類推算率標準表

符 号	1	2	3	4	5	6	7	8	9	10
%	143	207	401	515	629	744	800	906	943	1000

第5号表 標準正味與行過不足價格修正率表

與行過不足間數		同上	0.5	1.0	1.5	2.0	2.5
利 率	過		0.973	0.986	0.996	0.998	0.984
	不足		1.008	1.015	1.025	1.030	1.036
與行過不足間數			3.0	3.5	4.0	4.5	5.0
乘 率	過		0.962	0.957	0.952	0.947	0.941
	不足		1.026	1.035	1.043	1.043	1.043
與行過不足間數			5.5	6.0	6.5	7.0	7.5
乘 率	過		0.936	0.931	0.927	0.922	0.918
	不足		1.092	1.102	1.112	1.122	1.132
與行過不足間數			8.0	8.5	9.0	9.5	10.0
乘 率	過		0.914	0.910	0.906	0.902	0.898
	不足		1.114	1.123	1.134	1.145	1.156

第6号表 三角地是 包含可土地の價格進減率表

角 度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率	0.85	0.90	0.85	0.80	0.95	0.70	0.65	0.59	0.53	0.47

標準間口比斗角地斗側方路線更正率表

第7号表

四 米	六 米	八		一〇		二五		三〇		三三		側方路線力度 間口	
		米	米	米	米	米	米	米	米	米	米	間	米
0.95	0.901	0.810	0.732	0.719	0.678	0.642	0.611			5.5	10.0		
0.925	0.902	0.853	0.782	0.761	0.720	0.683	0.644			6.0	10.91		
0.997	0.959	0.919	0.854	0.834	0.794	0.757	0.723			6.6	12.0		
1.000										7.15	13.0		
	0.990	0.965	0.912	0.896	0.856	0.820	0.788			7.7	14.0		
	1.000		0.954							8.2	16.0		
		0.992		0.939	0.906	0.874	0.842			9.5	17.27		
		1.000	0.982							9.9	18.0		
			1.000	0.997	0.987	0.977	0.968			10.0	18.18		
										11.55	21.0		
				0.999	0.992	0.976	0.956			12.0	21.80		
				1.000						12.1	22.0		
					0.999	0.990	0.978			13.0			
					1.000					13.2	24.0		
						0.990	0.980			15.0	27.27		
						1.000				15.3	26.0		
							0.996			15.0	27.27		
							1.000			15.4	28.0		

銳鈍角側方道路價格更正率表

第9号表

銳角	角度	25度	30	35	40	45	50	55	59	65	
	率	0.900	0.889	0.879	0.870	0.862	0.857	0.851	0.847	0.840	
鈍角	角度	95度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率	0.993	0.994	0.996	0.999	1.001	1.003	1.005	1.008	1.010	

附表比隣分類基準表

地 域	商業	住居		工場・商店											
	1級	100%	1級	30%	1級	40%									
	2級	25%	2級	32%	2級	40%									
	3級	70%	3級	26%	3級	36%									
路 幅	巾負	35%	30	25	20	15	11	8	6	4					
	率	120	114	107	97	82	65	58	49	42					
道 路 勾 配	勾配	100%	90	80	70	60	50	40	35	30	25	20	18	15	12%
	率	90%	68	66	64	61	57	53	48	45	41	36	34	30	28%
路 線 方 向	方向	NEE	E	NE	NW	NNE	NW	NN	NNW						
	率	100%	92	50	41	24	15	12	10						
交 通 干 涉	時間	2分	3	4	5	6	7	8	9	10	10				
	率	60%	56	53	49	46	42	39	35	31	23				
採 光	道路方向	E-W	W-SE	N-S											
	率	100%	92	53											

附表第3号表

路線價算出表

車 價	指 數

第8號表

公共用地負擔規程

公共用地負擔規程

第1條

施行規則第14條規定에 依한 公共用地에
對하여 土地各單이 負擔하는 面積은 本規程에 依
한다

第2條 道路(廊廊剪除의 土地包含) 廣場, 公園, 溝渠,

其他 公共에 依하는 土地로서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그 隣接地에서 負擔하는 土地 以外의 土
地는 區域內 一般地 土地各單이 共同負擔으로 하
고 그 負擔面積은 土地各單의 整理前의 評定價格
과 整理后의 評定價格과의 比에 依하여 定한 別
表 第1号表에 依한 負擔率을 標準面積에 乘하여
算出한 것으로 한다

第3條 道路 및 廣場의 用에 供하는 土地는 그 全部

또는 一部 이에 按한 土地 各單의 負擔으로 하

고 各土地가 負擔할 面積은 아래 各條의 規定에 依하여 算出한 것으로 한다

1. 土地各單의 前面道路의 負擔面積은 別表第2 号條에 表示한 負擔幅員에 該面積을 乘하여 算出한 面積 但 該土地가 標準間口(別表第4 号條)에 達하지 아니하는 角地에 連續하고 또 該 全部 및 一部가 街角에서 標準間口의 距離以内に 있는 街道는 例外로 한다

2. 前條 但書에 該當한 土地의 道路負擔 面積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負擔外 隣接角地 側 面道路 按面積에 別表第3 号條의 負擔幅員을 乘한 面積에서 該面積에 別表第6 号條의 負擔 率을 乘한 面積을 減한 剩餘面積을 負擔한다

3. 到地與行이 5間未滿일 때에는 按面積에 別 表 第4 号條의 率을 乘한 更正按面積에 依하 여 負擔한다

4. 1項의 土地로서 2個以上の 道路에 接하는 境通에는 그 前面道路에 對한 負擔面積은 本條 第1項에 依하여 이를 算出하고 그 側面道路에 對한 負擔面積은 別表 第3호에 表示한 負擔 幅員에 그 接面積을 乘한 것으로 한다. 但 그 土地가 角地로서 標準開口를 갖지 아니한 境通에 있어서 側面道路에 對한 負擔面積은 그 接面積에 다시 別表 第6호의 負擔率을 乘한 面積으로 한다.

5. 前項의 境通에서 前面道路와 側面道路와 側面 道路와의 区分은 아래 方法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가. 各道路의 幅員이 다를 때는 幅員이 큰 것 을 前面道路로 하고 其他를 側面道路로 한다.
 나. 各道路의 幅이 同一한 때는 路線傾角이 淺 은 것을 前面道路로 하고 其他를 側面道路

로 한다

다. 道路幅員이나 路線幅外 同一한 때는 次하
는 바에 依한다

6. 廣場에 接한 土地에 있어서는 交會道路幅員
이 相當한 境域에는 그幅員이 道路를 交會道
路幅員이 相當하지 아니할 道路에는 幅員이
큰 道路를 廣場에 面한 側에 存在하는 것으
로 看做하여 이를 前西道路로 하고 그 土地
에 接한 交會道路를 側西道路로 看做하여 그
面積面積은 本條 第1号 및 第3号에 依하여
算出한 面積으로 한다

7. 本條에서 標牌間口라 함은 前西道路의 接西
長을 말한다

第1号表

共通負担率表

整理前研究費格別 ・元 ・比率		負担率		負担率		負担率		負担率		負担率	
例		例		例		例		例		例	
1	00	0	51	1	22	0	63	1	44	0	94
1	01	0	52	1	23	0	63	1	45	0	94
1	02	0	52	1	24	0	64	1	46	0	95
1	03	0	53	1	25	0	64	1	47	0	96
1	04	0	53	1	26	0	65	1	48	2	27
3	91	2	00	4	17	2	14	4	42	2	28
3	92	2	01	4	18	2	14	4	44	2	28
3	93	2	01	4	19	2	15	4	45	2	29
3	94	2	02	4	20	2	15	4	46	2	29
3	95	2	02	4	21	2	16	4	47		
4	86	2	09	5	09	2	61				
4	86	2	09	5	10	2	61				
4	87	2	50	5	11	2	62				
4	88	2	50	5	12	2	62				
4	89	2	51	5	13	2	63				

第2号表 前面道路敷地沿道負担幅員表

前面道路幅員		40'	35'	30'	25'	20'	15'	12'	10'	8'	6'	4'
片側負担幅員	M	126	143	160	177	194	211	228	245	262	279	296
	間	653	622	591	560	529	498	467	436	405	374	343

側方道路敷地角地沿道負担幅員表

第3号表

側方道路幅員		40'	35'	30'	25'	20'	15'	12'	10'	8'	6'	4'	
片側角地 負担幅員	南側地端	M	3,097	2,300	2,500	3,097	3,000	1,617	1,263	1,170	1,100	1,030	
		間	1,100	1,000	1,278	1,365	1,574	1,661	1,870	1,957	2,166	2,253	
	北側地端	M	3,20	2,80	2,51	2,20	1,91	1,50	1,31	1,12	1,03	94	85
		間	1,76	1,58	1,39	1,21	1,02	83	64	45	26	7	1

前面道路敷地沿道負担奥行5間未満土地の負担率表

第4号表

奥行幅員	5間未満	4間未満	3間未満	2間未満	備考
率	50%	85%	80%	25%	

第5号表

道路幅員	20.7	25	30	25	20	15	12	10	8	6	4	備考
前西道路正味奥行	30.7	28	26	24	22	21	20	19	18	16	13	
角地標準	米	30	28	26	24	22	21	20	19	18	16	13
門 口 間	4.5	15.4	14.3	13.2	12.1	11.5	11.0	10.4	9.9	9.4	8.9	8.5

側方道路負担表

第6号表

道路幅員	4.7	6	8	12	15	20	25	30	35	備考
5.0	77.1	82.1	96.7	139.4	171.4	213	233	259	287	
6.0	59.3	59.2	85.9	98.2	98.2	116.1	120	140.3	144.9	
4.0	55.7	55.9	91.9	85.4	85.4	83.4	79.4	107.7	102.3	
7.15	104.0									
8.0		55.0	56.5	51.2	91.2	89.4	256	220	287	
8.8		100.0								
9.0			52.2	55.4	25.4	53.9	50.7	82.2	84.2	

開口	27	6	8	12	15	20	25	30	35	備考
9.9			100.0							
10.0				58.2	58.2	99.7	94.6	91.7	88.8	
11.0				99.7	99.7	99.2	98.4	95.1	92.6	
11.55				100.0	100.0					
12.0						95.9	99.2	99.6	95.6	
12.1						100.0				
13.0							99.9	95.2	99.6	
13.2							100.0			
14.0								99.9	99.2	
14.3								100.0		
15.0									99.8	
15.4									100.0	

第9號表

事業費概算書

事業費概算書

1. 總面積 512.440 平方米 155,000 坪 (坪当 2,741 坪)
2. 宅地面積 389.435 平方米 117,804 坪 (坪当 2,367 坪)
- 一 金四億貳仟五百萬 -- 別墅 425,000,000
1. 別墅金 金四億貳仟五百萬 別墅 425,000,000
1. 別墅地盤面積 494.314 平方米 149,530 坪 (坪当 2,367 坪)

内 容

名 稱	項 目	員 數	單 位	單 價	全 額	備 考
區區整理費					425,000,000	
1. 工事費					363,800,000	
道路工事費					162,000,000	
管線工事費					31,000,000	
排水工事費					98,000,000	
宅地造成費					428,000,000	
補償費					30,000,000	
2. 事務費					30,765,000	
3. 清算利益					435,000	
4. 予備費					30,000,000	

上水道工事費概算書

一金. 参円壹百萬 円整 # 31,000,000.

名称	規格	数量	單位	單價	金額	摘要
주철파이	80 ^{MM}	2,075	M	1,500 ^円	3,112,500 ^円	
	100 ["]	2,250	"	1,900 ["]	4,275,000 ["]	
	150 ["]	1,160	"	2,900 ["]	3,364,000 ["]	
	200 ["]	1,600	"	4,000 ["]	6,400,000 ["]	
	250 ["]	1,510	"	5,500 ["]	8,305,000 ["]	
	계					25,732,500 ["]
잡비			20 ⁴⁷ %		5,267,500 ["]	
합계					31,000,000 ["]	

道路工事費概算書

一金壹億六千貳百萬圓整 # 162,000,000

道路百續 114,968平方米 坪

名 稱	規 格	員 數	單 位	單 價	金 額	備 註
土 工	切 土		m ³	100	7,900,000	
	盛 土					
	流用盛土	79,000	m ³	150	11,850,000	
	純盛土					
	至 장비	1,150	台	100,000	115,000,000	1,150A
橋 梁			如所			
涵 洞						
了 築	440 x 800					20053接 張工事
小 計					134,750,000	
費					27,250,000	
合 計					162,000,000	

宅地造成工事費概算書

一 金 104 万 8 千 8 百 圓 整 # 42,800,000.

内 訳

名 稱	規 格	員 数	單 位	單 価	金 額	備 考
土 工	盛 土					
	流 砂 土	120,000	m ³	150	18,000,000.	
	粘 土					
	切 土	120,000	"	100	12,000,000.	
石 築	築 台	2,000	"	2,500	5,000,000.	
小 計					35,000,000.	
費 用			20%		7,800,000.	
合 計					42,800,000.	

補償費檢算書

一、全 參 照 高 地 檢 算 書 共 30,000,000.
内 訳

名 稱	現 価	員 数	單 位	單 価	全 額	備 考
建物移転	移屋	110	棟	20,000 円	2,200,000 円	
	浄屋	210	棟	-	20,300,000 円	
電気移転	和屋	23	本	-	1,400,000 円	
基礎費		11	基	10,000 円	110,000 円	
		9	基	2,000 円	18,000 円	
合 計					30,000,000 円	

事務費概算書

一 参事七拾文第王行 利息 # 30,765,000

内 収

名稱	員數	單位	單價	金額	備 註
俸給	司理	3	100,000	300,000	司理 3人
	主任	3	30,000	90,000	技士 1人
	技師	1	90,000	90,000	技員 3人
	技士	3	45,000	135,000	臨時職員 5人
	工員	5	24,000	120,000	
雜給		人			測天 人
需用品代	5000 2000 } 400,000 2000 2000 } 2000 5000 = 300,000,000 2000 1200 2000 = 10,000 2000 1000 2000 = 10,000 2000 1000 = 10,000 2000 2000 = 20,000 2000 2000 = 20,000			測量器具: 三角架 1台 2000 1000 千級二級 事務用品 = 原日紙 萬用紙 10,000 方眼紙 鋼筆 普通紙 紙木代 其他	
起原利子					技士 人
雜費				$10,000,000 \times 3\% \times 2$ $= 3000,000$	技員 人 臨時職員 人
小計				7500 2000 2000 2000 10,000 $\times 10 = 2,000,000$ 7500 2000 2000 2000 10,000 $\times 10 = 2,300,000$	
雜費				4000 2000 = 400,000 2000 2000 $\times 10,000 \times 2 = 2,000,000$	計 2,400,000
合計				30,765,000	

(71年度) 業務費年度別豫算書

一 金壹仟萬壹萬五千圓 總計 10,015,000

品名	数量	単価	金額	備考	人員
総計	主任	5	400,000 × 5 = 2,000,000	役員	5人
	技士	1	30,000 × 1 = 30,000	技師	1人
	技員	3	45,000 × 3 = 135,000	技員	3人
	主任	5	120,000 × 5 = 600,000	役員	5人
	技員	3	130,000 × 3 = 390,000	技員	3人
総計	測来	2	20,000 × 2 = 40,000	測来	1人
その他	印刷費		100,000		
	雑費		1,000,000		
	出張費		10,000		
	通信費		15,000		
	雑費		20,000		
	その他		28,000		
総計			3,173,000		
その他	技術者 出張 交通費				
	雑費		2,710,000		
その他	雑費	1	20,000 × 1 = 20,000		
	雑費	2	100,000 × 2 = 200,000		
総計			10,015,000		

第10號表

路線調查與公共用地調查

— 11 —

路線調書集計表

等級	種類	番号	職員	延量	百領	元美 巴	元美	立
大	路	3	24	1.136	22.400	11.616		
中	路	1	20	120	13.600	4.114		
		2	15	120	13.800	4.124		
小	路	2	8	72	5.228	1.721		
		3	6	722	42.240	13.02		
計				11.028	114.144	34.798		
巴						362.12		
△				11.028	114.144	34.798		

等级	类别	序号	组别	长度	面积	起点	终点	主要用途
大路	3	1	1	196	7.281-	4	1	A2-2'
"	"	2	"	160	4.225-	A2	A1'	12.12
中路	1	1	20	180	4.114-	B1	B10'	15.12
"	2	1	15	174	8.66.4	410'	B2-2	15.12
"	"	2	"	129	3.309.2	B8'	A6	44.34
小路	2	1	2	136	4.281.2	A12	A7	3.24
"	3	1	6	115	102.4	B7'	C31-	"
"	"	2	"	88-	106.2	B7	C32-	"
"	"	3	"	108-	119.3	B6	C34-	"
"	"	4	"	14-	11.2	B4	C39'	"
"	"	5	"	17.5	176.4	C36-	C37	7.5
"	"	6	"	106-	112.3	C40-	C38	"
"	"	7	"	248-	122.2	42	C42	13.24

类别	序号	柜号	延后	面积	柜类	柜类	柜类
√	3	8	6	201.5	H. 12	A14	C31-1
"	"	9	"	210.5	418.2	A13	C31
"	"	10	"	420.5	814.5	A1	C18
"	"	11	"	518.5	1018.5	A4	C11
"	"	12	"	618.5	1218.5	B3	C12
"	"	13	"	718.5	1418.5	C1-1	B22
"	"	14	"	818.5	2118.5	K1	K2
"	"	15	"	918.5	4118.5	B11-1	C1P
"	"	16	"	1018.5	1018.5	C14-3	C13
"	"	17	"	1118.5	1118.5	A2-2	C10
"	"	18	"	1218.5	1218.5	A1-1	C15
"	"	19	"	1318.5	1318.5	G11	C12
"	"	20	"	1418.5	1418.5	G18-1	C12
"	"	22	"	1618.5	1618.5	B1P	C15

等级	类别	番号	姓名	延長	面積	起 兵	終 兵	主要地
1	3	25	157	256.22	B10	C10	15.4	
"	"	26	222	422.4	C11-1'	C12-1'	7.4	
"	"	27	A2	121.4	C15	C16	15.2	
"	"	28	40.4	23.4	C18	C17	3.2	
"	"	29	45-	4.4	C19	C110	"	
"	"	30	26-	471.4	C10-1	C11	"	
"	"	31	69-	1232.4	C28	C17'	"	
"	"	32	94-	134.4	A14'	A15'	"	
"	"	33	44.4	21.4	B2-1	A3-2	7.4	

公共用地調書

區分 用途	位 置	面 積	備 考
公園	11 B1	350-	
	15 B2	300	
	12 "	300	
	37 "	300	
	56 "	350	
			計 1600-
市場	39 B2	850	
		合計 2,450坪	

第11號表

國有地編入調書

—

國有地編入調書

洞名	池番	池目	池積	摘要
홍은동	321-5	도	5	4
	325-5	전	24	.
	324-1P	.	45	..
	321-16	.	15	..
	" - 15	.	8	..
	325-7	.	54	..
	425	도	163	..
	314-	.	501	..
31P	.	72	..	
남가좌동	12-3	.	51	.
	13-18	.	414	.
	80-6	.	71	.
	90-6	..	1P	.
	320	구	3,521	.
	322	"	1,732	.
327	계	76	.	
홍은동	401	구	123	.
북가좌동	5-6	도	465	.
홍은동	외동쪽	도	122	.
남가좌동	"	.	581	.
홍은동	.	구	1,158	.
홍은동	"	계	3361	.
			합계 13,668.-	

第12號表

事業地區面積에 對한
公共用地面積對比表

事業地區面積에 對한 公共用地面積 對比表

事業地區面積	公 共 用 地				備 要	
	用途別	地目	面積	比率		
(100,000.00) 100,000 坪	公	國	公	1,600	1.6%	
	市	場	坐	100	0.1%	기설시량
	廣	場	道			
	道	路	"	38,100	38.1%	
	河	川	川			
	墳	墓	地	20,334	20.33%	
	合	計		50,134	50.13%	